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손철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11. .
발 의 자 : 손철운·김금용·김경선
황인성 의원
(찬성자 9인)

1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5.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라목)
- 나.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가 보훈보상대상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마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9조, 제1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
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
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

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
증서를 소지한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>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</p>

<신 설>

2. ~ 9. (생 략)

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
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
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
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보훈
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국가
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
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

2. ~ 9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주차장법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○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 </div>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취사항

[주차장법]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[제8조제1항](#)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[도로교통법](#)」 [제2조](#)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.>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~ ⑤ (내용생략)

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[제13조](#)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22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생략

3. 미첨부 사유

- 5.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에 따른 부분적인 수입의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,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경미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함.

4. 작성자

건설교통위원회 손 철 운 의원